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 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정업무수행 방법 등(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1) 인정기관은 인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인정취소 여부를 심의함
- 2)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유효기관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

다. 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안 제7조)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

라.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안 제8조)

국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고, 국제기구·단체 등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국제통용평가로 선정토록 규정

마.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1)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운영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규정
- 2)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토록하고,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3)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한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안 제1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가입금액 등에 대해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불임

대통령령 제 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여부 결정) 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여부 결정 및 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인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취소) 인정기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3. 법 제17조제1호의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증명서 발급사실 등의 공고) 인정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3조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평가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별표 1에 따른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최근 2년 내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4. 그 밖에 평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능력을 갖추는 것

② 평가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기관 선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6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기관 선정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선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7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① 평가기관은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의 평가방법
2. 평가 중단 또는 일부 생략 등 평가절차
3. 평가의 품질관리, 운영 관리 등 평가업무 관리 방안
4. 평가업무와 관련된 문서·시설 등의 보안 관리
5.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의무와 책임
6. 그 밖에 평가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세부평가기준, 평가 범위 및 일정, 평가참관 등에 관한 사항을 인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평가업무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일 것
2. 평가기준이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
3. 전자서명서비스 관련 표준이나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단체 또는 국제적인 전자서명서비스 이용자 단체 등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평가일 것

제9조(평가기관 선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받은 가입자 확인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인정기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연계정보의 처리)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

증사업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 (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 보험금액 : 건당 1억 원 이상, 총 한도보상액 10억 원 이상의 금액
2. 보험기간 : 제5조에 따른 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할 것

제14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2.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다양한 전자서명 이용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지원
3. 법 제5조제4호에 따른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설비 등의 운영을 위한 상호연동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9제5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9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⑦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사용하여”로 한다.

⑧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4조의7제1항제2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⑩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⑪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3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⑬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제2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다.

같은 조제6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같은 조제9항제1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으로 한다.

⑯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7제4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항 중 “공인인증시스템”을 “인증시스템”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7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인증서”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2호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⑲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㉖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같은 조제3항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같은 조제5항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㉗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

한다)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㉘ 상법의 전자전자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㉙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㉚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㉛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

관에서”를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로 한다.

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㉚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포함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㉛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25조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26조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한다.

㉝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중 “공인전자서

명”를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중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중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중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중 “공인전자서

명”를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중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제6조 관련)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가. "동등학력"이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업무경력을 말한다.

나. "정보기술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다. "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라. "개인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마.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바. 동일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 모든 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한다.

사. 아래의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대

체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경력인정 요건-중복 인정 불가>

구 분	경력 인정 요건	인정기간
정보보호 경력	o "정보보호"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2년
	o "정보보호"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1년
	o 정보보안기사	
	o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의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o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SC ²)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개인정보보호 경력	o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2년
	o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1년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o 개인정보관리사(CPPG)	
정보기술 경력	o "정보기술"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2년
	o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o 정보시스템감리사	1년
	o "정보기술"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o 정보시스템감리원	
	o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평가기관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제6조 관련)

□ 평가기관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기준 및 절차

가.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심사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업무수행 요건 심사기준(필수)을 모두 충족하고 업무수행 능력 심사 점수가 총점 100점 만점 중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평균 점수 산출 시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한다.

(1) 평가기관 업무수행 요건 심사기준(필수)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세부 평가 기준
인력	전문인력 고용	· 별표 1에 따른 5인 이상의 전문인력 상시 고용
공정성	객관성·공정성·독립성 확보	· 평가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2) 평가기관 업무수행 능력 심사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기관 배점	세부 평가 기준
-------	---------	-------	----------	----------

1. 조직 및 전문성 (15점)	전담조직	등급	5	o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유무 · 전담조직 보유 : 배점의 100% · 전담조직 없음 : 0점
	전문인력	비율	5	o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수 · 10명 이상 : 배점의 100% · 10명 미만 : 배점의 $\chi\%$ ※ $\chi = (\text{전문인력 수} / 10\text{명}) \times 100$
	전문성	비율	3	o 최근 3년간 평가 전문인력의 평가 참여일 수의 합 · 200일 이상 : 배점의 100% · 200일 미만 : 배점의 $\chi\%$ ※ $\chi = (\text{총 참여일수} / 200\text{일}) \times 100$ ※ 평가기관 최초 신청일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한다.
		비율	2	o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최근 3년간 교육 시간 · 평가 전문인력 모두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 배점의 100% · 평가 전문인력 모두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배점의 $\chi\%$ ※ $\chi = (100\text{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평가 전문인력 수} / \text{총 평가 전문인력 수}) \times 100$
	재정 능력	등급	5	o 신용평가등급 · AAA ~ A- : 배점의 100% · BBB+ ~ BBB- : 배점의 70% · BB+ ~ BB- : 배점의 50% · B+ ~ B- : 배점의 30% · CCC+ 이하 : 배점의 10%
		등급	5	o 자본금 보유 · 5억원 이상 : 배점의 100% · 5억원 미만 : 배점의 0점
2. 신뢰도 (15점)	업무 지원 및 피해보상 대책	비계량	5	o 운영자금 법인통장 보유 및 유지 수준 o 지정취소, 부도·해산, 업무상 과실 등에 따른 피

				해보상 관련 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
3. 업무수행 (60점)	평가업무수행 지침	비계량	5	○ 평가 업무 수행 지침 보유 ○ 평가 업무 수행 지침의 타당성 및 준수여부 -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의무와 책임 - 품질관리, 운영관리, 평가업무, 문서관리, 시설관리, 보안관리 절차 및 방법
	품질관리	비계량	15	○ 평가의 품질 보증 및 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교육, 세미나 등의 활동 ○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확보방안 및 이행 ○ 평가업무 참여자 및 업무 담당자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확보방안 및 이행 ○ 관계 법령 및 내부절차 준수, 청렴 등에 대한 독립적인 내부감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평가 결과에 대한 처리절차 준수 등에 대한 책임자 검토 ○ 평가 업무 관련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절차마련 및 이행
	운영관리	비계량	15	○ 평가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의 투명성 및 타당성 ○ 평가 신청 접수,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 ○ 평가 이후 자문료, 출장비 등의 지급의 적절한 이행 ○ 평가 희망기업에 특정 기관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중용하는 등 부당행위 방지대책
	평가관리	비계량	15	○ 평가팀 구성 원칙마련 및 이행 ○ 평가 전문인력의 의무와 책임 준수, 보안관리 및 감독 방안 및 이행

				○ 평가 수행절차 준수 ○ 평가결과보고, 인정위원회 상정 등 사후 절차 준수 ○ 평가 수행 시 문서 및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및 이행 ○ 평가 실적 및 평가 전문인력 참여 내역
	문서관리	비계량	10	○ 업무의 기록 및 문서에 관한 관리절차 마련 및 준수 ○ 업무 담당자간 파일 송수신 및 문서 공유시 안전한 방식을 사용 ○ 업무 기록 및 문서에 권한이 없거나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 대책 및 이행
4. 시설 및 보안 (10점)	시설 및 보안	비계량	5	○ 독립된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 ○ 평가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장소 ○ 사무공간 출입의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 보안설비 운영 ○ 문서 분실, 도난 등 예방을 위한 보안시설 마련
	시스템 및 보안	비계량	5	○ 평가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사무관련 시스템 보유 ○ 평가 정보의 침해사고, 유출사고를 대비한 보안시스템 운영
합계			100	

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및 선정취소 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선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평가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선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선정취소	
라.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선정취소
마.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 방법, 평가기준·절차 등을 위반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선정취소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
- 3)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1항	500	1,000	2,000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자	법 제26조제2항 제1호	100	300	500
다.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 제26조제2항 제2호	100	300	500
라.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2항 제3호	100	300	500
마. 법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2항 제4호	100	300	500
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26조제2항 제5호	100	300	500
사.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2항 제6호	100	300	500

평가기관 선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총 직원 수	운영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수

「전자서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평가기관) 선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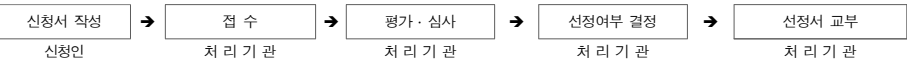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법인의 정관 1부 3. 평가 업무를 수행할 5인 이상의 전문인력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4. 별표2에 따른 평가기관 업무수행 능력 심사기준 증빙자료 각 1부 (별도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제 호

평가기관 선정서

기관명 :

대표자 :

주 소 :

유효기간 :

선정조건 :

「전자서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연 락 처	(044) 202-6446